



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

제 정 일	1980. 4.18
개 정 일	2021. 4.15
개정차수	10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종료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며, 대학 외부위원을 2명이상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5. 1, 2019.10. 1)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위촉한다. (개정 2019.10. 1, 2021. 4.15)

③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여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관장할 수 있다. (개정 2019.10. 1)

④ 위원 중 교육혁신지원센터장 및 교양교육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 (신설 2017. 6. 1, 2019.11. 1)

제 3조 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5. 1)

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1. 5. 1)

1. 교육과정의 개발, 개편, 변경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 8.10)

2. (삭제 2018.10. 1)

3. 「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관한 사항 (개정 2011. 5. 1, 2020. 8.10)

4. 교육과정 및 교수·학습지침서 개발의 연구에 관한 사항 (개정 2011. 5. 1, 2017. 6. 1)

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(신설 2011. 5. 1)

제 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2/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11. 5. 1, 2019.10. 1)

제 6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 7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1. 5. 1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